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항공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66호, 2025. 1. 31. 공포, 2025. 8. 1. 시행)됨에 따라, 점검 결과 공개 시 점검 시기 및 대상,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본문 중 “여행업자”를 “여행업자(이하 “여행업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
2.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
3. 그 밖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

제3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

마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

제33조제1항제30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

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여행업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
2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법 제84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여행업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항공운임 등 총액) ①·② (생략)	제25조(항공운임 등 총액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<u>여행업자</u> 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·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.	③ ----- <u>여행업자</u> (이하 “여행업자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 제8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	1.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
	2.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

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(생략)

<신설>

나.·다. (생략)

<신설>

5. ~ 29. (생략)

30. 상업서류송달업,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

3. 그 밖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

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

다.·라. (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)

마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

5. ~ 29. (현행과 같음)

30. -----

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~ 자. (생략)

<신설>

31. ~ 35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⑦ (생략)

--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
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
정보 제공 실태 점검

31. ~ 35. (현행과 같음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
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
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
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
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여행
업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항공
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
공 실태 점검

2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
부과·징수(법 제84조제2항제
19호에 따라 여행업자에게 부
과·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하
다)

③ ~ ⑧ (현행 제2항부터 제7
항까지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08